

공무원 무급 육아휴직제 실시-육아휴직 확산 '신호탄'

아빠도 1년 육아휴직 할 수 있다

은행원, 교사 이어 공무원도 가능, 내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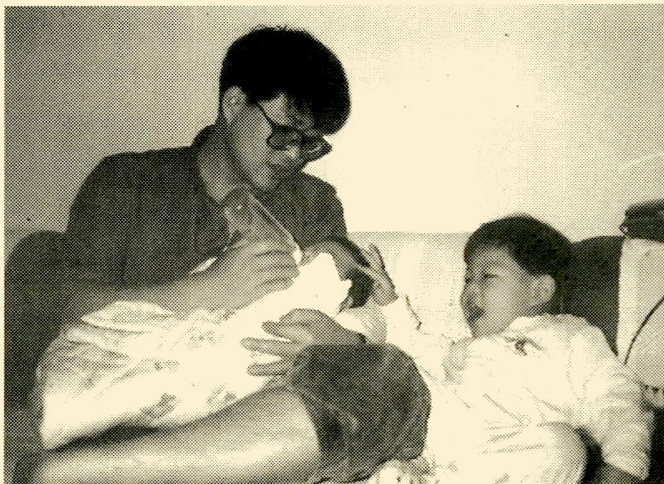
1세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에게 1년간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산전산후 유급휴가 60일외에 금융권과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시행되던 육아휴직제를 정부가 전 공무원에게 실시함으로써 여타부분에 육아휴직이 확산될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건강한 2세 국민육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민자당 백남치 정책조정실장, 조용직당 행정·경제위원장, 황영하총무처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 육아휴직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엄마뿐 아니라 아빠인 남성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당의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책임연구원은 "육아휴직제를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만 주어질 경우 예상되는 여성고용 기피라는 차별고용 행태의 지속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양육=여성의 몫이라는 성별역할 고정관념의 해소에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포함해 1년 이내 무급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 확산이 아직 미미한 이유는 고용주들이 1년의 휴직기간을 여전히 부담으로 느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무급'이라는 점에서 사용을 꺼리기 때문.

반면 금융권에서는 90년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육아휴직제를 따냈고 신한, 동화, 대동은행 등 신생은행에서는 본봉의 30%~50%의 임금까지 받고 있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 육아휴직제를 시발로 육아휴직제가 일반대기업 등 기업체까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급이 가능한 국가, 기업, 근로자 3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제의 실시나 단축형 근무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현재 국제조약의 규정은 육아휴직제를 남녀공통으로 한다는 것으로 가까운 일본은 물론 사회복지제도가 완비된 스웨덴 등에서는 육아휴직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의 확산을 위해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근무시간 단축형'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국가와 기업, 근로자 3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보장이 가능한 점, 남성들이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점진적 방안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4급의 경우만 보직할 수 있는 과장직에 3급도 보직임명할 수 있는 '과장 복수직급제'를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기로 했고 가족의 질병간호 등을 위한 가사휴직제도 도입, 1년 이내의 기간에 '무급의 가사휴직'을 인정하도록 했다. 〈박혜숙 기자〉